

12/7
8446
총 무 처

국무총리지시 제 1 호

(720-2067)

1984. 4.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기획관리실장

제목 인·허가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에 관한 지시

1. 정부는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82년
도에 "인·허가 제도의 전면적 개선" 작업을 추진하여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없는 인·허가 사항을 통·폐합하거나,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단행함으로써 인·허가 제도의 효율적 운
영을 기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인·허가 관련법령 중에는 아직도 인·허가의 요건이
나, 기준등이 애매모호하여 관계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행
정편의 위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
려가 있으므로 "인·허가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작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정부는 현행 인·허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개
선하고자 별첨 "인·허가 제도의 전면적 검토 및 보완작업지침"과
함께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각부처 장관은 소관 인·허가 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법령

상 모호한 인·허가 기준이나 요건등을 보완, 구체적인 “인·허가 운영지침”을 작성시달하여 우선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 법령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인·허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나. 총무처장관은 이 작업을 별첨 작업지침에 의거 총괄하고, '84년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정책과제”에 반영 추진할 것.

다. 각부처장관은 “인·허가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작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고, 이작업의 조치결과를 별첨 작업지침에 의거 '84.5.31 까지 총무처에 제출할 것.

첨부 : 인허가 제도의 전면적 검토 및 보완작업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11-13, 17, 18, 20-37, 39-46, 51-53), 나(1)

認·許可制度의 全面的 檢討 및
補 完 作 業 指 針

1984. 4.

1. 目的

現行 認・許可制度를 全面 檢討하여 不明確한 要件
및 基準등 裁量權 濫用의 素地가 있는 要素를 補完
· 改善함으로써 認・許可制度의 効率的 運營을 圖謀하
고, 行政에 대한 國民의 信賴를 提高함.

2. 作業體系

- 主管（總括）：總務處（行政調查研究室）
- 支援・調整 : 青瓦臺 政務2（制度改善），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
- 實務作業 : 各院・部・處・廳・서울特別市(이하 “各
部處”)

3. 作業方針

主 要 內 容

- 現行 認・許可制度를 全面 檢討하여 年內 完結目
標至 補完作業推進(各部處)
- 本作業을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主要政策課
題”로 推進(總務處)

가. 現行 認·許可制度의 全面的 檢討·分析(各部處)

(1) 檢討對象

- 許可, 認可, 免許, 承認, 登錄, 申告등 名稱如何를
불문하고 法規에 依한 一般的 禁止를 解除하여
適法하게 一定한 行爲를 할 수 있게하는 모든
行政行爲
- 法令에 依하여 委任하거나 委託한 認·許可의
境遇에도 法令을 管掌하는 中央部·處·廳에서
綜合檢討

(2) 檢討基準(主眼點)

- 法令 및 運營指針의 規定이 모호하여 裁量權
濫用의 可能性이 있는지 與否 檢討

* 重點檢討 事項

- 國民便宜와 行政目的의 慎重한 調和堅持 -

- 認·許可要件 및 基準(施設 및 公益基準등)
의 公益上 客觀的 適正性 檢討
 - 許可制限, 取消 및 停止등 規制基準의 妥當性 檢討
 - 條件, 期限, 負擔등 부관의 限界明示 및
妥當性 檢討등

4. 認・許可制度의 补完作業 推進(各部處)

推進方針

認・許可制度의 全面的 檢討・分析 結果를 토대로 补完作業이 必要한 認・許可 事項에 對하여 우선 “運營指針”을 示達하여 實施하고, 繼續해서 “關係法令補完整備” 推進

(1) 運營指針作成 示達

○ 作成對象

- 法規上 細部基準등이 不分明하여 行政의恣意 또는 擔當公務員의 裁量素地가 있는 認・許可

○ 作成方法 및 示達時期

- “認・許可 運營指針”을 各部處 “訓令”으로 作成하여 '84.6.1부턴 施行할 수 있도록 措置

* 指針作成時 留意事項

- 行政與件을 감안하여 現實的 基準 및 要件提示
- 疑問의 여지가 없도록 具體的이고 明白한 基準 및 要件明示
- 地域的 特性을 考慮하여야 할 事項은 該當 機關에 準則提示 등

(2) 關係法令 補完整備作業推進

○ 整備對象

- 法規趣旨上 “運營指針” 만으로는 認・許可의
 効率的 運營이 不完全하여 關係法令을 改正함
 이 바람직하다고 判斷되는 法令

○ 整備期限

- 年內完結 目標로 推進され 可能한 最短 時日
 내에 所管 法令整備

4. 作業日程

○ 作業實施

- 認・許可制度의 全面的 檢討 및
 “運營指針” 示違 -----> '84年 4月 - 5月末

- 認・許可 關係法令補完整備 -----> '84年 4月 - 12月末

○ 作業結果通報 -----> '84年 5月 - 12月

- * 但 “運營指針 示違結果” 및 “關係法令整備
 案”은 “別添書式”에 依據, 優先 '84. 5. 31
 까지 通報

5. 行政事項

〈認・許可 制度의 全面的 檢討 및 補完作業結果 報告書 提出〉

○ 對象機關

- 各院·部·處·廳·서울特別市

○ 報告事項

가. 認·許可 制度의 檢討 分析 및 補完措置結果

 └ 認·許可 制度의 現況 및 檢討 分析 結果

 └ 運營指針 示達結果

 └ 關係法令 補完整備 改正案

나. 認·許可 關係法令 整備狀況

○ 報告期限

 └ 위 「가」 事項 : '84年5月31日까지 -----> 總務處

 └ 위 「나」 事項 : 翌月5日까지 -----> 總務處

○ 報告書式

 └ 위 「가」 事項 : 別添書式(1)

 └ 위 「나」 事項 : 成長發展을 為한 制度改善 “月刊推進狀況 報告書式(1)”에 의함 (別添書式(2))

〈参考事項〉

1. “月刊推進狀況 報告書式(4)”는 “'84年 成長發展을
爲한 制度改善 作業指針(國務總理指示 第1號 : '84.
2.29)을 參照
2. 民願制度 自體改善事項 通報依賴(總務處 정민 125-
176 : '83.12.2)에 依據, 各部處가 '84年에 推進하
기로한 “民願制度改善計劃”과 本作業指針에 依한
“改善事項”이 重複되는 것은 本作業으로 一元化
하여 推進함.

認・許可制度의 檢討分析 및 补完措置結果

①一連番號	②認・許可名	認・許可制度現況 및 檢討・分析	部處名 據尙課長 ④未備點 ⑤運營指針示達結果 ⑥法令改正(案)
		(3) 關聯法令條文	

*: 작성일정은 제작자로

作成要領

- ① 項 : 所管 認·許可 總 件數 및 當該 認·許可의
順番記入 (例 : 18-3)
- ② 項 : 法令에 規定된 認·許可名 記入
- ③ 項 : 資格·免許 基準등 許可要件, 施設基準 및 許
可制限·取消·停止등 規制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 法令名 및 關係法令 規則(訓令, 例規,
條例등 包含)의 條文을 그대로 記入
- ④ 項 : 法令規定이 不分明하거나 基準이 缺如되어 擔
當公務員의 裁量素地가 있다고 判斷되는 點을
個條式으로 記入
- ⑤ 項 : 各院·部·處·廳의 長이 示達한 運營指針 示
達日字·受信處·指針名稱 記入
但, 寫本別途 添附
- ⑥ 項 : 法規趣旨上 運營指針만으로는 不安全하여 關係
法令을 改正함이 바람직하다고 判斷되는 事項
에 關하여 部處의 改正案 記入

法令整備推進狀況

課題區分	
課題名	

主管部署	部(院·處·廳) 局 課
處理期限	'84.

法 區 分	令 名	改 正 要 旨	推進日程					推進狀況		備 考 (不振事主 ・對策)
			立案	協議	國務 會議	國會	施行	日字	實績	

<作成要領>

1. 課題區分 : 移越課題와 '84課題로 구분 기재
2. 法令 : 法, 大統領令, 部令, 其他의 順으로 作成하고 區分欄에 明示
3. 改正要旨 : 改善案의 項目別로 作成하고 推進狀況이 다르면 項目을 分離
4. 推進日程 : 法令整備作業의 完結計劃을 月別로 기재
5. 推進狀況 : 立案, 關係部處協議, 黨政協議, 法制處提出 및 審議畢, 次官會議 및 國務會議上程, 通過, 裁可, 國會上程, 通過, 公布, 施行 등을 日字와 함께 明記